

# 『 2015년 노래연습장 사업자 교육 』 위탁 협약서

---

---

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(이하 “동”이라 한다)과 동대문구 노래연습장업협회(이하 “행”이라 한다)는 「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」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한 『노래연습장 사업자 교육』을 위탁함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**제1조(목적)** 이 협약은 “동”과 “행”간의 “노래연습장 사업자에 대한 위탁교육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“행”에게 대행시키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위탁범위)** “동”이 위탁교육과 관련하여 “행”에게 대행시키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『노래연습장업 사업자 교육』 실시 전반에 관한 사항
  -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실시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 또는 단체 소속의 전문강사섭외 및 교육 진행 일체
  - 교육실시 결과를 “동”에게 통지 및 결산보고
2. 불참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날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장소는 “동”이 제공한다.

**제3조(업무의 수행)** ① “행”은 “동”이 위탁한 노래연습장 사업자 교육 전반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며 교육대상자에게 불필요한 요구를 하거나, 본 교육 목적에 벗어나는 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② “행”은 위탁교육을 시행함에 있어 관계법규 및 “동”의 지침 등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.

**제4조(교육비 지급)** ① “동”은 이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(이하 “위탁교육비”라 한다)를 “행”에게 지급하되, 그 지급 한도액을 400,000원으로 한다.

② “동”은 교육종료 후 정산결과에 따라 지급한다.

③ “행”은 교육비를 지급 받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 집행계획서 및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여 “동”에게 청구하여야 한다.

④ “행”은 “동”의 교육통지 안내를 제외한, 교육에 수반되는 일체의 비용을 위

지급 한도액내에서 총당하며, 교육대상자에게 별도의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.

**제5조(교육결과 통보)** ① “행”은 교육 완료후 교육실시 결과를 “동”에게 1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.

**제6조(교육비 정산)** “행”은 교육 완료후 교육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15일 이내에 “동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지도·감독)** ① “동”은 이 위탁교육과 관련하여 “행”에게 의견을 반영토록 요구할 수 있다.

② “동”은 위탁교육과 관련한 “행”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“행”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자료제공)** ① “동”은 이 위탁교육과 관련하여 “행”에게 교육 수행에 필요한 기본 자료만을 제공하며, “동”이 제공하는 외의 추가자료 요구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청구한다.

② “행”은 “동”에게 노래연습장 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, “동”은 필요한 경우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“행”은 “동”에게서 제공받은 자료는 교육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며, 정보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발생시는 “을”이 모든 책임을 진다.

**제9조(교육장소 제공 협조)** “동”은 이 위탁교육에 필요한 교육장소를 “행”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장소제공에 적극 협조한다.

**제10조(협약의 해지 등)** ① “동” 또는 “행”이 협약을 중도에 해지 또는 해제(이하 “해지 등”이라 한다)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등의 예정일 10일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.

② “동”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의 해지 등을 할 수 있다.

1. “행”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

2. “행”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“동”이 인정하는 경우

③ “동”은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의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“행”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④ “동”은 “행”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중도에 해지 등이 되는 경우에는 교육비 전

액을 지급하지 않는다.

**제11조(기타사항)**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“동”과 “행”이 협의하여 정한다.

**제12조(협약의 해석)** 이 협약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협약서의 제 규정에 대하여 “동”과 “행”간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“동”과 “행”이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관련 법령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질의 회신에 따른다.

**제13조(시행일)** 이 협약서는 2015년 10월 일 부터 시행한다.

**제14조(협약의 효력 등)** ① 이 협약은 시행일로부터 협약사항의 이행완료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 다만, 민·형사상의 사건·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·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그 사건·사고와 관련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.

②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“동”과 “행”이 서명날인 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5년 10월 일

<b>“동” 성 북 구 청 장</b>	
<b>“행” 동대문구 노래연습장업협회</b>	